

# 2021년 하반기 공군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2021년도 하반기 공군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5.  
공군참모총장

## 1. 응시자격 요건

###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1)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2)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3)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 4) 채용직위별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가능한 자
- 5)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6) 경력인정 기간

- ‘전역(예정)군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예시: '21.11.15. 시험공고의 경우 '18.11.15. 이후 전역자이면 해당】
- ‘경력(군(공)무원, 학위, 근무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  
【예시: '21. 11. 15. 시험공고의 경우 '18.11.15. 이후 해당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 근무경력 기간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나. 구분모집별 응시자격 요건

- \* 공통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구분모집별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함.

### 1)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한 장애인 구분모집】

-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복무와 관계하여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예비역 포함)
- \* 「군인사법」 제37조제3항 :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 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복무)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 2) 【중증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사람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3)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 2.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20명]

채용직급/인원			응시자격	근무예정지역	임용예정일
직렬	계급	인원			
행정	8급	2	<b>① [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한 장애인 구분모집]</b> ①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예비역 포함)	전국	'22. 1. 1. 이후
군수	8급	2	<b>① [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한 장애인 구분모집]</b> ①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예비역 포함)	전국	'22. 1. 1. 이후
행정	9급	1	<b>② [중증장애인 구분모집]</b> ①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인 자로서 행정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전국	'22. 1. 1. 이후
군수	9급	1	<b>② [중증장애인 구분모집]</b> ①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인 자로서 군수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전국	'22. 1. 1. 이후
전산	9급	1	<b>② [중증장애인 구분모집]</b>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전산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산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국	'22. 1. 1. 이후
행정	9급	5	<b>③ [장애인 구분모집]</b> ① 행정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전국	'22. 1. 1. 이후
군수	9급	4	<b>③ [장애인 구분모집]</b> ① 군수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전국	'22. 1. 1. 이후
전산	9급	4	<b>③ [장애인 구분모집]</b> ① 전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산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국	'22. 1. 1. 이후

###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가. 시험방법

공공분야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명, 신체조건(키·체중, 용모(사진))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에게 채용과 관계없는 응시자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다만,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체조건·학력 기재 요구 가능

- 1) 제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를 초과할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4배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2) 제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평가
  - 면접 평가요소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⑤ 예의·품행·준법성·도덕성 및 성실성
  - 합격기준
    - ① 면접 평가요소 5개항목을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 ②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나.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만 임용 가능

### 4. 채용시험 일정 등

####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1. 26.(금) ~ 11. 30.(화)	12. 14.(화) 예정 ※ 면접시험 계획포함	12. 21.(화) 예정	12. 24.(금) 예정

## 나. 유의사항

- 1)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 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공군모집」 -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2)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인터넷 공군 홈페이지 「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 (등기우편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접수방법 : '21. 11. 26.(금) ~ 11. 30.(화) / 등기우편접수

※ '21. 11. 30.(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접수

나. 제출주소 :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군무원채용담당(☎042-552-1453/1457)

\* “붙임 6” 서식에 주소, 성명, 응시직위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6. 응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붙임 1) 1부

\* 반드시 해당 직급(3~5급 10,000원 / 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 등에서 구입)

2.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목록표(붙임 2)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1) 경력증명서 1부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근무경력 인정기간은 전일제(1일 8시간) 근무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일제가 아닌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기간 및 기준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무경력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외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근무경력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지 인사부서 연락처 기재 (경력증명서 상에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기로 기재)

※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

※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자료(내용)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 1) 또는 2)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복수제출 가능

### 3. 장애인 구분모집 제출서류

- 장애인(일반, 중증) : 장애 증빙 서류 1부(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으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 :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총 2부 제출)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1부(확인서 등)
  2. (중앙)전공상심사결과통보서 1부 \* 국방부, 각군본부 혹은 군사령부 발급서류

4.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붙임 3) 1부

5. 개인정보제공 · 이용 동의서(붙임 4) 1부

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 5) 1부 \* 군인 또는 군무원 전역(퇴직)자만 제출

7. 신원조사 제출서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제출)

- \* 신원진술서,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 기본증명서, 병적기록표[현역군인 제외, 군 미필(면제)자는 병적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 ※ 별도 첨부된 신원조사 서류제출 절차 안내문을 참조하여 원서접수 기간[11. 26.(금) ~ 11. 30.(화)] 내에 관련서류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원조사 제출체계에 등록

8. 응시표 회송용 봉투(붙임 6) 1매 :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 \* 지원자 응시표 회송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표를 부착한 후 받으실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송주소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 응시표 수령이 불가하여 시험진행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7. 기타 유의사항

- 가. 군무원 채용시험은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니,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마.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바. 동일한 모집공고/일정으로 진행되는 채용시험 내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사.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자. 시험관련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042)552-1453/1457, (군)920-1453/14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직렬 \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b>전 산</b>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정보통신	-

※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및 가산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1년 하반기 공군 일반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공군참모총장 귀하

※ 응시번호		성 명	(한글)
모집구분/ 응시직급	/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부착하는 란  (“전자수입인지” 인 경우 원서 뒤에 첨부)
전자우편			
휴대전화			



# 응 시 표

2021년 하반기 공군 일반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 응시번호		모집구분/ 응시직급	/
성 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공 군 참 모 총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보 완 사 항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를(을)
------------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 또는 PC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모집구분/응시직급 :
  - 모집구분은  
【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한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①,  
【중증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②,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③으로 기재하고
  - 응시직급은 해당 구분모집 중 희망하는 채용직렬 및 계급(예 : 행정 8급,  
행정 9급, 군수 9급, 전산 9급 등)을 기재
  - 예시 : ① / 행정 8급, ② / 전산 9급, ③ / 군수 9급 등
3.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가군) 이상 : 1만원, 6·7급(나군) : 7천원, 8·9급(다군)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붙임 2]

##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 다음 페이지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 ① 응시직급 및 해당 자격요건

성명	응시직급	자 격 요 건

※ 공고문의 채용 자격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기재

### ② 응시자격 증명 제출서류

목 록	내 용

※ “① 해당 자격요건”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 / 제출

### ③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소속 근무지에서 전역퇴직이 가능한지 소속 근무지 인사부서에서 확인하고 해당사항에 ○ 표시

가 능	불 가 능

※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채용시험 응시 및 원서제출이 불가함

※ 최종합격 후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되며, 이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2021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공군참모총장 귀하

#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예시]

※ 공고문의 자격요건이 다음과 같은 경우(예시)

응시직급	응 시 자 격
전산 9급	① 전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산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작성방법]

### ① 응시직급 및 해당 자격요건

성명	응시직급	자 격 요 건
김공군	전산 9급	①, ② 자격 요건 중 본인이 지원하는 자격 요건 하나 이상을 공고문 내용대로 기재

※ 예를 들어 ①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성명	응시직급	자 격 요 건
김공군	전산 9급	① 전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공고문의 채용 자격요건 중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자격요건을 기재

### ② 응시자격 증명 제출서류

#### 1) ①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목 록	내 용
경력증명서 각 1부	① 00부대 000담당('05.3. 1. ~ '09. 5. 1. / 00년00월00일) 00부대 000담당('10. 1. 3. ~ '12. 6. 2. / 00년00월00일)

#### 2) ②의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목 록	내 용
자격(면허)증 사본 1부	① 정보처리산업기사('00. 0. 0.)

##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공군에서 시행하는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본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자격증 등 제출자료 일체의 진위 검증을 위한 공군의 확인서 발급 업무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 과정에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인, 서명)

**공군참모총장        귀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군무원 임용 선발에 있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사검증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 본 인

▪ 성 명

(서명)

▪ 주민등록번호

□ 개명 여부

□ 변경 여부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e-mail

▪ 직 장

▪ 직 위

▪ 직장전화

▪ 연락가능 팩스

개인정보처리기관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범죄 및 수사경력 관련자료 ..... 군검찰부, 군수사기관, 국방부검찰단, 경찰청, 검찰청	
민감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자료(범죄 경력자료 등)를 인사검증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 합니다.	
성명	(서명)

\* 수집된 개인정보 자료는 5년간 보관 후 파기됨

**보내는 사람**

**[공군 군무원채용 응시서류 재중]**

\* 응시 구분/직급 기재  
예) [장애인 구분 모집]  
행정 9급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우) 3 2 8 0 0